미국특허법 개정과 한미FTA
- 삼성 vs 애플의 특허소송 방청기

하이스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은구변리사(egkim@highestip.com)

목차

- 미국특허법 개정내용
- 한미FTA에 따른 한국특허법 개정내용
-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

미국특허법 개정내용(1/4)

- 선원주의
- Oath 및 assignment
  - substitute statement
- 신규성(미국 특허법 Old 102 (b)->New 102(a)(1))
  - On sale bar
- 신규성 의제(grace period)
- 확 대 된 선 원 (Old 102(e)->New 102(a)(2)), hilmer doctrine(102(d))

미국특허법 개정내용(2/4)

Changes to the Anticipation Standard

- Example 2. From MPEP Section 706.02 (f)
- Under current law. Reference Publication and patent of 35 U.S.C. 111(a) application with 35 U.S.C. 119 (a-d) priority claim to a prior foreign 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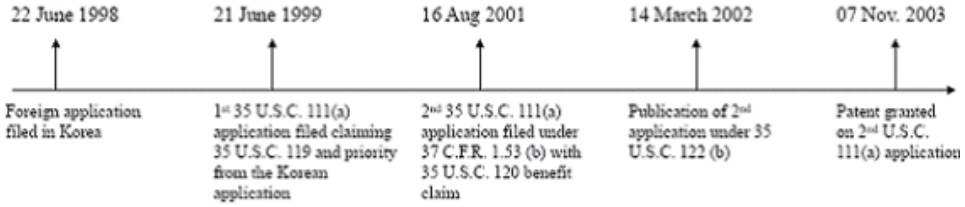

- Under current law, the earliest effective date that this patent is usable as a reference is June 21, 1999, (Hilmer Doctrine).
- Under the new law, the earliest effective date of this patent as a reference is June 22, 1998, since Hilmer Doctrine has been overturned.

미국특허법 개정내용(3/4)

Changes to the Anticipation Standard

- Example 4. From MPEP Section 706.02(f)
- Under current law, Reference based on the national stage (35 U.S.C. 371)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on or after November 29, 2000 and which was not published in English under PCT Article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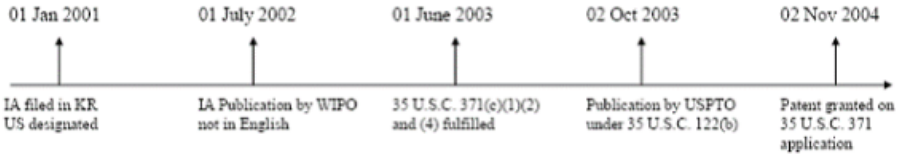

- Under current law, the earliest effective date of this patent, as a reference is the WIPO publication date.
- under the new law, the earliest effective filing date of this patent as a reference is the IA filing date , which is the effective US filing date.

미국특허법 개정내용(4/4)

- Best mode requirement는 유지하되 Best mode defense는 인정하지 않음
- 보충 심사(Supplement examination)
- 제3자정보제공(Pre-Issuance Third Party Submisstion), 이의신청(Post-Grant Review, 등록후 9개월 이내), 무효심판제도(Inter Partest Review, 등록후 9개월 이후) 도입, 선사용권(Prior Use defence), 무권리자 출원 무효(derivation proceeding), 전자출원 인센티브(Electronic Filing Icentive) 등 한국과 동일한 제도 도입
- 진보성

한미FTA에 따른 한국특허법 개정내용

-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및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안 제30조제1항, 안 제116조 삭제)
  - 이법 시행후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미FTA 발효일)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적용 시점
공지 예외 적용 기간 (제30조)	6월 이내	12개월 이내	한미 FTA 발효되는 날 이후에 출원된 건

-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적용 시점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 기간 연장 (제92조의 2 내지 5)	해당 사항 없음	특허심사 지연에 따라 특허 등록이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한미 FTA 발효되는 날 이후에 출원된 건

-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 신설)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 등

하이스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은구변리사(egkim@highesti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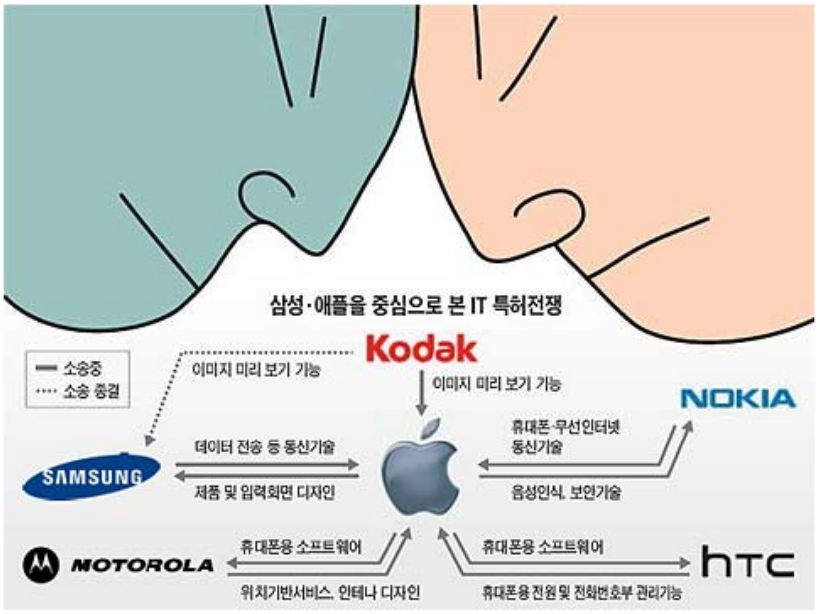

스펙	갤럭시S	아이폰4
운영체제	안드로이드2.2	Ios4.3
CPU	1GHz(SSPC111)	1GHz(애플A4)
디스플레이	4.0 슈퍼아몰레드(480*800)	3.5(640*960)
사이즈 및 무게	122.4×64.2×9.9mm/121g	115.2×58.6×9.3mm/137g
용량	16GB	16GB/32GB
외장저장매체	최대 32GB	없음
카메라	5MP AF / 720p(30fps)	5MP AF / 720p(30fps)
화상통화	와이파이+3G	와이파이
배터리	1,500mAH	1,450mAH
플래시지원	지원	미지원
블루투스	3.0	2.1

▲ 갤럭시S vs. 아이폰4 제품사양 비교

▲ 아이패드 vs. 갤럭시탭

제품사양	갤럭시탭	아이패드
CPU	A8 1GHz	A4 1GHz
ROM	내장 16GB/외장 32GB	16/32/64GB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2.2	iOS4.3
디스플레이	7인치 WSVGA91024×600)	9.7인치 Xga(1024×768)
카메라	전면 130만/후면 300만	X
음성통화	O	X
영상통화	O	X

▲ 갤럭시탭 vs.아이패드 제품사양 비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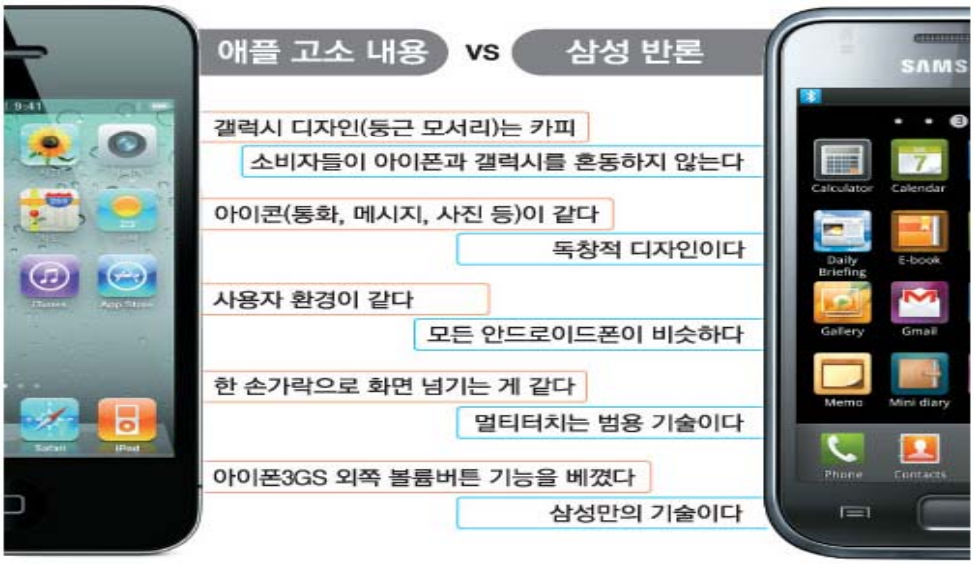

< 출처 - 매일 경제 >

http://thisismynext.com/2011/04/19/apple-sues-samsung-analysis/

Evolution of smartphone

Legal Ba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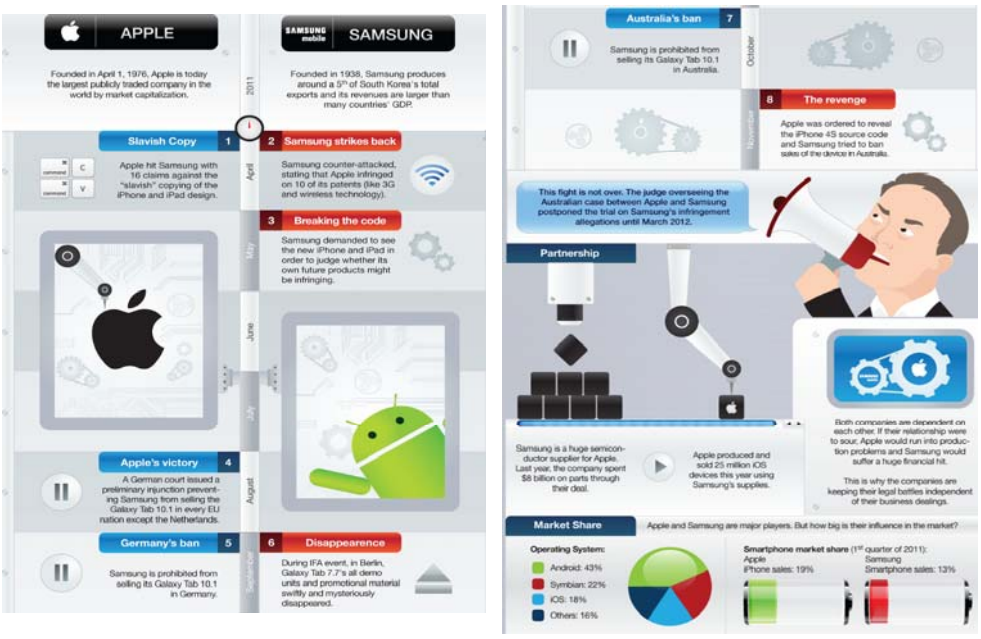

Wi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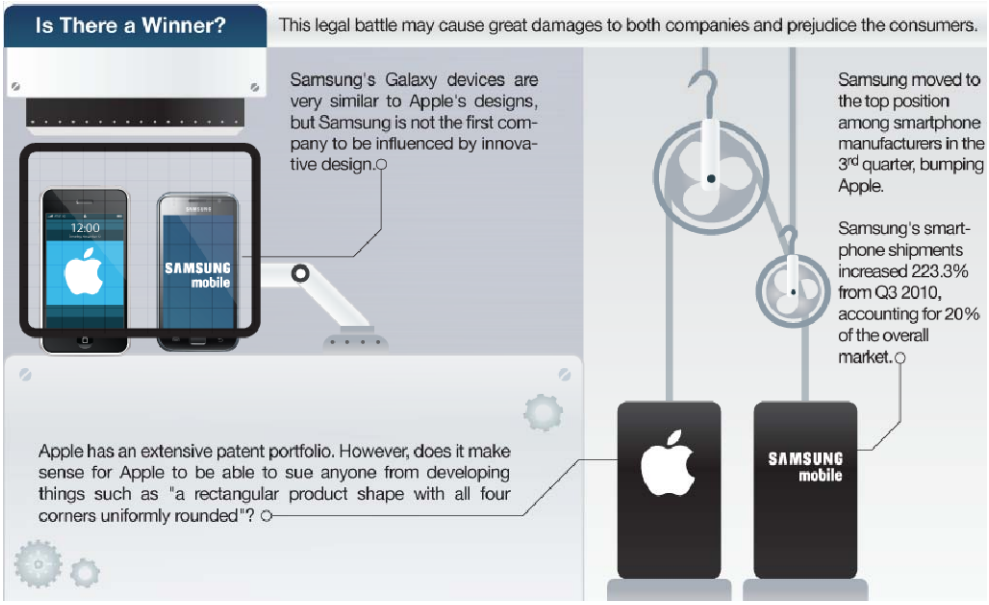

삼성 vs. 애플의 특허분쟁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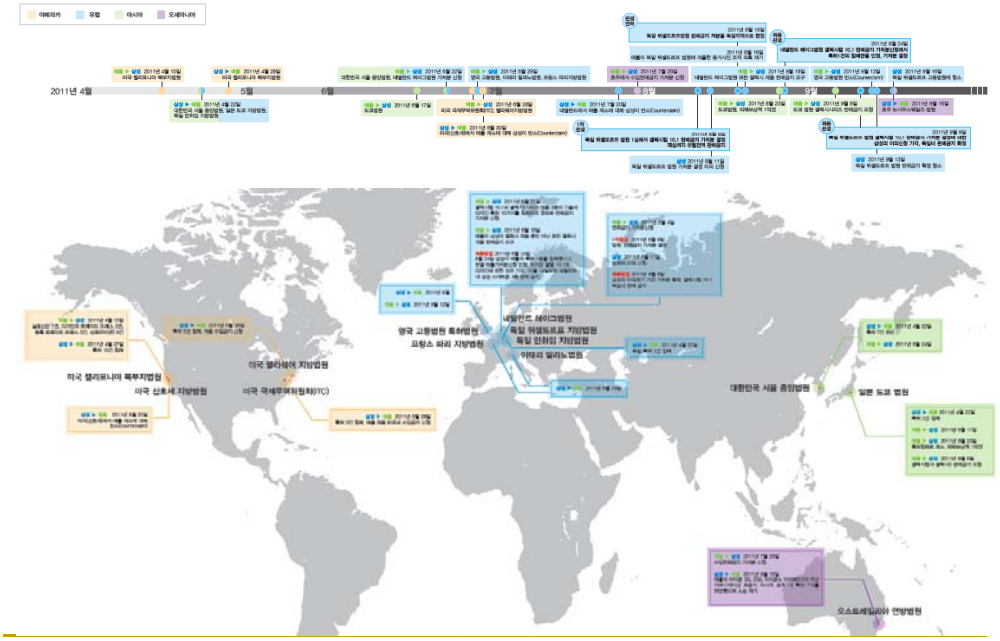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일지

일자	국가(지역)	진행사항
11.04.15	미국(산호세)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11.04.21	한국(서울중앙)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제소
	독일(만하임)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제소
	일본(동경)	삼성전자, 가처분 신청
11.06.16	독일(만하임)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11.06.17	일본(동경)	애플, 특허침해 제소/가처분 신청
11.06.22	한국(서울중앙)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11.06.23	네덜란드(헤이그)	애플, 가처분 신청
11.06.28	미국(ITC)	삼성전자, 애플제품 수입금지 신청
11.06.29	영국(런던)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제소
11.06.30	미국(산호세)	삼성전자, 4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제소
11.07.05	미국(ITC)	애플, 삼성제품 수입금지 신청
11.07.28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애플, 가처분 신청
11.08.04	독일(뒤셀도르프)	애플, 가처분 신청
11.08.09	독일(뒤셀도르프)	법원, 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8/16 삼성전자 독일법인으로 가처분 판정)
11.08.24	네덜란드(헤이그)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10건 중 1건만 인정 (효력 10/14~)

일자	국가(지역)	진행사항
11.09.09	독일(뒤셀도르프)	법원, 삼성전자의 탭10.1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11.09.12	영국(런던)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11.09.16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제소
11.10.05	프랑스 이태리	삼성전자, 아이폰4S 가처분 신청
11.10.13	호주(뉴사우스웨일즈)	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결정
11.10.13	미국(산호세)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 보류
11.10.14	네덜란드(헤이그)	법원, 삼성의 가처분 신청 기각
11.10.17	일본(동경)	삼성전자, 아이폰4S 등 가처분 신청
11.10.17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삼성전자, 아이폰4S 가처분 신청
11.10.17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삼성전자, 탭10.1 가처분 결정(10/13)에 대한 항소

11.11.28	독일(뒤셀도르프)	애플, 갤럭시탭10.1N 가처분 신청
11..11.30	호주(뉴사우스웨일스)	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항소심에서 삼성 승소 판결
11.12.02	미국	애플의 가처분신청 기각(무효)
11.12.02	호주(뉴사우스웨일스)	애플, 갤럭시탭 10.1 가처분상고
11.12.08	프랑스(파리)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 기각
11.12.09	호주(대법원)	삼성전자, 판매금지 명령 승소
11.12.10	한국(3차변론)	무효, 비침해, 표준매칭, FRAND와 침해금지, 권리소진

삼성 Vs. 애플(한국)
-표준특허의 침해여부 판단

- 삼성-애플, 1차 변론부터 '불꽃공방'(종합)
- 삼성 "150쪽 보냈는데 고작 8쪽 대답", 애플 "구체적 내용없어 답변할 게 없다"
- 조성훈 기자, 이태성 기자 | 2011.07.01 14:51

-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제기된 특허권 침해소송 첫 변론부터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원고와 피고 신분으로 만난 양측은 시작부터 날선 공방을 벌이며 서로에게 칼날을 겨눴다. 3개 대륙, 6개국에서 송사를 벌이며 전면전에 들어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UMTS, HSUPA) 표준특허 4건을 포함해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4를 비롯한 애플 제품 케이스에는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애플 측은 "기술표준은 수천가지 기술의 총합"이라며 "채택된 모든 기술이 제품에 구현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전자는 애플이 정확히 어떤 기술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면서 "제품에 어떤 기술이 구현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자사가 확보한 특허가 해당 표준의 필수특허에 해당한다며 날을 세운 반면, 애플은 삼성이 주장한 특허는 사실 다양하며 20개 이상의 버전업 그레이드가 있었던 만큼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67호 법정에서 열린다

삼성 vs 애플 소송의 쟁점(1)

-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206921

- **삼성전자, 애플에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
  - 삼성전자측은 이날 공판에서 "애플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최저 손해액이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측 변호인은 "지난 2010년 애플의 매출이 1조 8000억원인데 감사보고서에 나타나있는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3.4%였다"면서 "이를 적용하면 570억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측은 이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이번 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 **'프랜드' 조항 놓고 공방**
  - 표준특허는 제3자가 공유할 수 있고, 특허 관련 금지명령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애플측 주장의 요지?
  - 삼성전자 측이 "계약협상과 관련된 것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며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로열티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며 입장차

삼성 vs 애플 소송의 쟁점(2)

-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206921

- **표준특허 침해 관련 공방**
- 삼성측은 "삼성의 특허는 3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이라면서 "애플의 제품인 아이폰4나 아이패드2도 3세대 이동통신의 기술 표준을 구현한 제품"이라고 설명
- 삼성의 기술이 3세대 이통통신의 기술 표준이기 때문에 애플의 기술이 삼성의 특허를 자연스럽게 침해했다는 것이 삼성전자측의 주장
- 반면 애플측은 "애플의 기술은 삼성의 3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과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다"며 "본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참고한 것 뿐"이라고 주장
- 기술표준은 수천가지 기술의 집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애플 측의 설명

삼성의 표준특허 및 응용특허들

- 한국특허 975특허: CDMA 통신시스템에 관한 특허
- 한국특허 제933144특허: WCDMA 방식에서 단말기의 전송파워와 관련된 특허
- 한국특허 제913900특허 : 패킷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
- 한국특허 973호(응용특허)

삼성 vs 애플 소송의 '11.12.09. 재판 방청기(1)

- 표준특허 3건의 무효 및 비침해
  - 진보성 없음
  - 확대된 선원에 해당함
    - 29조 3항 적용시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의 적용시점
      - 제1국출원일(외국 특허출원일)
      - 제2국출원일(한국 특허출원일)
      - 한국에는 명문규정 없고, 일본 및 미국(1966년 hilmer doctrine)의 판례 존재
  - 출원전 공지
    - 삼성의 기고문에 의해 해당 특허 출원전 공지
- 표준특허 3건의 비침해
  - 삼성전자의 표준특허와 표준규격이 매칭되지 않음 주장
  - 삼성전자: 고려대 교수님 및 chipworks에 실험의뢰하여 침해 입증

삼성 vs 애플 소송의 '11.12.09. 재판 방청기(2)

- 삼성의 표준특허들의 적시공개의무 위반여부
  - 234특허의 공개여부
    - 제안일: 1999.6.경
    - 우선일: 1999.5.19
    - 출원일: 1999.6.23
    - 표준특허 적시공개일: 2003년 경
  - 애플측: 표준규격전 포괄적 선언 후 표준규격 완성후 특정 특허의 공개행위는 3GPP IPR 정책의 적시공개의무 위반
    -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의무 위반함.
    - R99.2.0.0에 234특허가 매칭되고->3GPP 25.212 5.6.0 대상으로 특허침해 주장
    - 삼성은 2.0.0과 5.6.0 사이 삼성전자 특허를 공개함.
    - 부공정행위에 해당함: 표준채택 위해 특허 미공개 행위

삼성 vs 애플 소송의 '11.12.09. 재판 방청기(3)

- 삼성의 표준특허들의 적시공개의무 위반여부
  - 삼성측 반박: 234특허의 내용이 2.0.0부터 포함된 것은 맞지만 애플의 아이폰 4s는 HSUPA(Release 5)를 적용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규격을 근거로 표준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임
  - 삼성측: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정시기마다 특허리스트 공개함

기업	특허권수	공개기간
퀄컴	37건	9개월
IDC	78건	5년 5개월
에릭슨	59건	1년 5개월
노키아	325건	1년 5개월
모토롤라	14건	3년 9개월
삼성	76건	1년 7개월

삼성 vs 애플 소송의 '11.12.09. 재판 방청기(4)

- FRAND 라이선스 허여 및 침해금지 가능여부
  - 애플측 주장: 원고도 FRAND 확약의 의미와 중요성 인식
  - 삼성 Vs 인터디지털 델라웨이 지방법원 No 07-167 사건에서 FRAND 확약의 중요성 강조
  - Xavier Bouchbza 교수의 증언(파리 11 대학교수)
  - 원고(삼성전자)는 이 소송에서 2%의 실시료조차 FRNA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FRAND 확약 및 ETST IPR 정책의 준거법은 프랑스법
    -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구속력을 가짐
  - Laurent Aynes 전문가 진술서(파리 11대학)
    - acceptance of contact is made by the act: FRAND 계약서로 침해금지 불가능
  - FRAND 라이선스 허여→침해금지 안되고 손해배상만으로 충분
  - Rambus 사건에서 원고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공동 제출함.
- 소결
  - 구속력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
  - 원고가 FRAND 확약에 반해 침해금지 안됨.

삼성 vs 애플 소송의 '11.12.09. 재판 방청기(5)

- FRAND 라이선스 허여 및 침해금지 가능여부
  - 소결:
    - 구속력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
    - 원고가 FRAND 확약에 반해 침해금지 안됨
  - 부경법 위반
    - 삼성 Vs 인터디지털 ITC 소송: WCDMA 총합이 5% 넘어서는 것은 안되고 인터디지털 2% 요구는 FRAND 위반
  -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동일함?
  - 결과적으로 보복적 권리행사에 해당함.
  - 로열티 요구에 대한 정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삼성 로열티 제공시 경쟁적 시장 참여가 불가능함.

삼성 vs 애플 소송의 '11.12.09. 재판 방청기(6)

- FRAND 라이선스 허여 및 침해금지 가능여부
  - 삼성측 반박
    - 피고의 계속된 특허침해 및 라이센싱 협상 거부
      - 피고는 계속적으로 특허를 침해
      - 2010.8. 경 애플사가 먼저 세계적 실시권 계약 체결 요구
      - 2010.11.경 4차례 협상만 애플의 디자인특허에 대해 삼성의 휴대폰 매출 x% 로열티 요구: 삼성의 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의 2배 요구
      - 애플사 2011.4. 원고를 상대로 미국 등 특허소송 제기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름
    - ETSI IPR 정책은 특허권자의 권리 보장
      - 애플측 강조→ETSI IPR 정책 3.2조
      - 삼성측 강조→ETSI IPR 가이드 1.1조

삼성 vs 애플 소송의 '11.12.09. 재판 방청기(7)

- FRAND 라이선스 허여 및 침해금지 가능여부
  - 피고의 실시권/침해금지청구 포기 주장의 부당성
    - 원고주장: FRAND 조건으로 실시권을 허여할 의무가 있을 뿐, 실시권 설정하지는 않음.
    - 프랑스법상 실시권 계약의 부존재: 준거법은 프랑스법인 것에 대해 양측 모두 인정
      - 실시료 정함없이 계약 성립 불가
      - 라이센시 특정없이 계약 성립 불가
      - 계약서없이 계약 성립 불가
  - ETSI 규정상 실시권 부존재가 명백
    - IPR 정책 4.1: '라이선스 조건 및 협상' 당사자가 협상하라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볼 때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으면 '라이선스 조건 및 협상'을 당사자가 협상하라는 문구등이 포함될 필요가 없음

삼성 vs 애플 소송의 '11.12.09. 재판 방청기(8)

- FRAND 라이선스 허여 및 침해금지 가능여부
  -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청구 인용 판결례
    - 거절시 금지청구는 가능
    - 라이센싱 전무가 에릭 스타 식도 의미있는 양자 협상 거절하거나 라이선스가 제안한 FRAND 조건을 거절한 경우 침해금지 청구 가능
    - 사례
      - 독일 orange book case
      -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 필립스 Vs Sk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1576301

'특허 프랜드' 뭐기에…삼성-애플 끝장승부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다음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에 분쟁 대상인 특허 5개 가운데 표준특허 4개에 대해 프랜드 문제를 논의한다. 표준특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규격에 따라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특허다.

애플은 이들 4개 특허에 대해 프랜드 원칙에 따라 삼성에 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특허 로열티 등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만큼 방청객을 모두 퇴정케 하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애플은 "삼성이 정당한 특허 사용 요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은 "애플이 터무니없이 낮은 사용료를 제시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 하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소송의 핵심은 결국 프랜드를 준수하는 적정한 특허 사용료가 얼마냐 하는 점"이라며 "표준특허라도 특허권자에 적정한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면 특허 침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특허소송의 경우 가처분에서는 애플이, 본안소송에서는 삼성에 유리하게 나왔다. 지난 11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열린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 재판에서 재판부는 "프랜드를 적용하더라도 특허를 사용하려는 애플이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며 자국의 1999년 '오렌지북'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네덜란드 필립스가 표준특허를 가지고 독일 SK하이텍이라는 기업에 승소했던 독일 대법원 판례다. 만하임 지법이 내년 1월 예정된 판결에서 삼성 손을 들어주면 아이폰4S 등 주요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이 내려질 수 있다.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지난달 14일 삼성의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최근까지 몇 년간 애플에 로열티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이 필요할 만큼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 2.4%의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 관계자는 "애플이 삼성특허를 사용하고 있음은 명백한 만큼 가처분과 달리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본안소송에서는 삼성이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에서 삼성 특허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변호사들은 지난달 화상회의를 열고 "오렌지북 판례 등을 볼 때 본안소송에서는 삼성이 유리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플은 삼성의 표준특허가 아닌 특허도 사용하고 있어 프랜드 문제가 아니라도 특허침해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vs 애플 소송의 '11.12.09. 재판 방청기(9)

- 특허소진이론
  - 특허 침해 당사자가 라이선스를 얻은 부품을 구매해 쓰는 경우
  - 애플의 아이폰 4S의 모바일칩은 인텔칩으로, 삼성과 인텔과 라이센스 계약하였으므로, 인텔칩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특허들은 이미 소진된 것이란 주장 관련 기사.
  - 과거 엘지의 왕특허 관련된 소송의 쟁점과 관련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삼성과 인텔의 계약은 2009년에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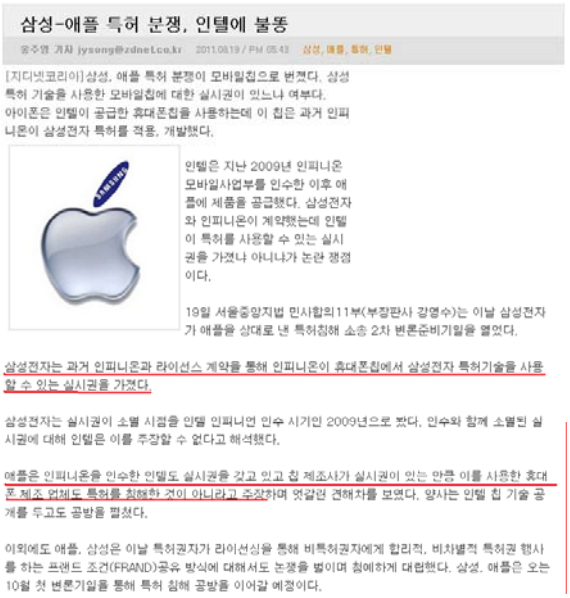

삼성-애플 특허 분쟁, 인텔에 불똥

[지디넷코리아]삼성, 애플 특허 분쟁이 모바일칩으로 번졌다. 삼성 특허 기술을 사용한 모바일칩에 대한 실시권이 있느냐 여부다. 아이폰은 인텔이 공급한 휴대폰칩을 사용하는데 이 칩은 과거 인피니온이 삼성전자 특허를 적용, 개발했다.

인텔은 지난 2009년 인피니온 모바일사업부를 인수한 이후 애플에 제품을 공급했다. 삼성전자와 인피니온이 계약했는데 인텔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가졌나 아니냐가 논란 쟁점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과거 인피니온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인피니온이 휴대폰칩에서 삼성전자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가졌다.

삼성전자는 실시권이 소멸 시점을 인텔 인피니언 인수 시기인 2009년으로 봤다. 인수와 함께 소멸된 실시권에 대해 인텔은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애플은 인피니온을 인수한 인텔도 실시권을 갖고 있고 칩 제조사가 실시권이 있는 만큼 이를 사용한 휴대폰 제조 업체도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엇갈린 견해차를 보였다. 양사는 인텔 칩 기술 공개를 두고도 공방을 펼쳤다.

이외에도 애플, 삼성은 이날 특허권자가 라이선싱을 통해 비특허권자에게 합리적, 비차별적 특허권 행사를 하는 프랜드 조건(FRAND)공유 방식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삼성, 애플은 오는 10월 첫 변론기일을 통해 특허 침해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 vs 애플 소송의 특징

-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청구
- 글로벌 특허소송
- 소송의 대상권리 중 디자인 포함
- 애플의 응용특허 vs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 삼성 vs 노키아, 모토롤라 등 표준특허권자 업체들과 애플은 근본적으로 특허포트폴리오가 다름

삼성 vs 애플 소송의 특징의 원인(1)

- 애플과 MS, 애플과 구글의 관계
  - 애플의 매킨토시 vs MS의 윈도 시리즈
    - 매킨토시의 폐쇄성 vs MS의 개방성
  - 애플의 iOS시리즈 vs 구글의 안드로이드
    - iOS의 폐쇄성 vs 안드로이드의 개방성
    - 삼성전자 및 HTC가 가장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채용 스마트폰 업체
    - 스마트폰의 최대 수혜자: 삼성전자, 최대 피해자: 노키아
- 스티브 잡스 vs 이건희
  -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기 전에 터치스크린의 태플릿 개발
  - 잡스가 애플로 돌아와 iPod 및 iPhone 개발
  - 잡스는 디자인과 UI를 가장 중시
  - 잡스는 232건의 특허의 발명자
-

삼성 vs 애플 소송의 특징의 원인(2)

- iPhone의 애플리케이션 칩
  - 삼성전자가 A4, A5 공급
  - 삼성입장에서 경쟁자이면서 고객
- 애플의 응용특허 vs 삼성의 표준특허
  - 애플은 3세대 및 4세대 통신기술의 표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 삼성은 3세대 및 4세대 통신기술의 표준화 에 참여, 표준특허 개발
  - 삼성 vs 노키아, 모토롤라 등 표준특허권자 업체들과 애플은 근본적으로 특허포트폴리오가 다름

애플의 응용특허 vs 삼성의 표준특허

- 애플의 대상권리
  - 응용특허 및 디자인특허
  - 트레이드 드레스
  - 상표
- 삼성의 대상권리
  - 응용특허
  - 표준특허